

# 꼭! 알아 두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 매월 게재하여  
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 
바랍니다.



## 정책자금 지원

### ◎ 신성장기반자금

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시설 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  
과 초기가동비 등을 지원합니다.

❖ 용자규모 : 7,820억원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3,354개사 중 2,360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5.3억원

❖ 지원대상

●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
※ 단,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

●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
● 농공단지입주기업,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

※ 단,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용자

❖ 용자범위

● 시설자금


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,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필요자금
- 안정성평가 및 유통·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※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또는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허용
- 생산성 향상,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부지매입비, 조성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)
- 기업간 인수·합병계약에 의거 유·무형자산,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



● **운전자금**

-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
- ※ 혁신형기업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%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비원
-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, 협동화(협업화)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 비용,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

❖ **융자조건**

- **대출금리**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1%p 차감(기준금리)
- **대출기간** :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,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
  -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- **대출한도** : 기업당 연간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  - 단,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  - 협동화 승인기업 : 추진주체 50억원(운전자금 5억원), 참가기업 45억원(운전자금 5억원) 단,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(운전자금 30억원), 참가기업 3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  - 협업사업 승인기업 : 추진주체 45억원(운전자금 5억원), 참가기업 40억원(운전자금 5억원)

❖ **융자방식**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(업체가 선택)

## 기술개발 지원

### ◎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. 수요처(정부·공공기관·대기업)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합니다.

❖ 지원규모 : 약 220개 과제(전체 예산 530억원)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과제 수 456개 중 214개 선정지원, 과제당 2.8억원

❖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※ 제외업종 :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 및 문화업, 공공·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

❖ 지원내용

- 수요조사 과제(460억원) : 수요처(대기업, 공공기관 등)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
  - 일반과제 :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,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
  - 전략과제 : 국방·기상·수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,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패키지형 과제
- 중소기업제안과제(70억원) : 중소기업이 아이디어(기술)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
- 과제 지원조건

구분		개발기간 및 지원금액	정부출연금 비중	비고
수요조사 과제	민간	최대 2년, 5억원	55% 이내	대기업 20% 이상 부담
	공공	최대 2년, 5억원	75% 이내	공공기관 부담없음
중소기업제안 과제		최대 1년, 2.5억원	75% 이내	자유 공모



● 우대사항

- 수요처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과제
- 중소기업형 유망기술(녹색성장, 신성장동력, 신제조기반 등)에 부합하는 과제
- 과제발굴 기술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

❖ 신청 · 접수 : 2011년 3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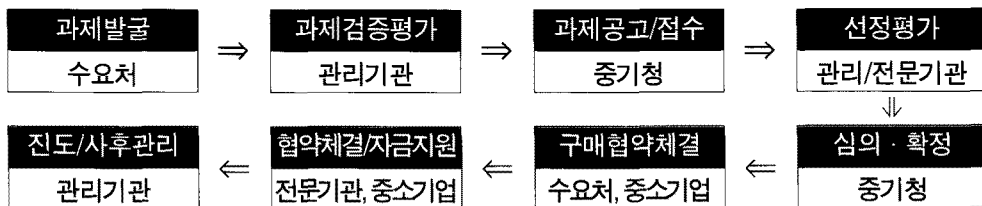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현장평가시 재무재표 등 증빙서류 확인

❖ 제출서류 :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

-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
- 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
- 최근 1년간 재무제표
-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



❖ 처리절차



❖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: 042-481-4444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: 042-715-2353~4
- 전용정보사이트 : www.smtech.go.kr(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)
-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